



[ 2019. 4. 23.] [ 112 , 2019. 4. 23., ]

( ) 02 - 3150 - 1331

1 ( )

2 ( ) ( " " ) 4 1 가 ( " " ) 2 1 1 ( ) . < 2004. 12. 10.>

3 ( 가 ) 4 1 「 」 ( " " ) 3 1 가 가 가 가 ( ) ( )

< 2004. 12. 10., 2006. 9. 7., 2011. 4. 4.>

1. 1
2. 1
3. 1 ( 가 ) 「 」 36 1 . < 2006. 9. 7., 2008. 12. 5., 2010. 9. 10.>

4 ( 가 ) 4 2 가 3 4 .

5 ( ) 5 1 2 5 . < 2003. 11. 17.> 4 3 2 . 3 5 4 4 3 ( ) ( 6 ) 가

. < 2003. 11. 17., 2004. 12. 10.,

2006. 2. 2., 2006. 9. 7., 2011. 4. 4.>

1. : 가
2. 가. <2006. 9. 7.> 1 . 가
3. : 1
4. : 가
5. : 1

2

「 」 36 1

.< 2006. 9. 7., 2008. 12. 5., 2010. 9. 10.>

4 3 5

7

.<

2006. 9. 7.>

[ 2003. 11. 17.]

6 ( 가 )

6 2

가

가

30

2

가

(

)

가

(

)

가

.< 2011. 4. 4.>

1

「 」 36 1

.< 2006. 9. 7., 2008. 12. 5., 2010. 9. 10.>

6 2

가

가

3

가

.< 2006. 9. 7.>

6 2(

•

)

7

6

•

1. 15 2

2. 16

3. 16 2

4. 18 1

[ 2014. 6. 5.]

7 (

)

10

2

4

"

"

가

0.2

0.8

.< 2008. 3. 6.,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2003. 11. 17.]

8 (

)

11

8

(

)

31

2

(

"

"

)

.< 2004. 12. 10., 2019. 4. 23.>

13

1

11 2

.< 2019. 4. 23.>

2

36 1

가 가

2019. 4. 23.>

[ 2019. 4. 23.]

9 (

)

11

1

"

"

1

.< 2008. 3. 6.,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10 ( ) 13 4 " " .< 2008. 3. 6., 2011. 4.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 3 ) 1  
2. 64

11 ( ) 11 9  
10

11 2( ) 17 3 10 2  
[ 2011. 4. 4.]

12 ( ) 18 1  
2 .< 2019. 4. 23.>

가 , 18 1 .< 2006. 2. 2., 2014. 6. 5.>  
<2014. 6. 5.>

18 1 1 12  
11  
, , ,  
. < 2014. 6. 5., 2019. 4. 23.>

1 23 1  
1

12 2 .< 2019. 4. 23.>

13 ( ) 18 3 " " 4  
. < 2014. 6. 5., 2014. 11. 19., 2017. 7. 26.>

18 3 .  
, .< 2011. 1. 26., 2019. 4. 23.>  
[ 2011. 1. 26.]

14 ( ) 19 1  
3

1 가  
3

.< 2006. 2. 2.>

2

.< 2006. 2. 2.>

[ 2019. 4. 23.]

15 ( ) 19 1

4 . < 2019. 4. 23.>

19 1

1

11

12

.< 2014. 6. 5., 2019. 4. 23.>

1

23 1

1

12 2

.< 2019. 4. 23.>

[ 2019. 4. 23.]

16 ( ) 19 3 " " 6

.< 2008. 3. 6., 2011. 1. 26., 2013. 3. 23., 2014. 6. 5., 2014. 11. 19., 2017. 7. 26.>

가

( "

" )

)

19 3

.< 2011. 1. 26., 2019. 4. 23.>

[ 2011. 1. 26.]

17 ( )

20

1

13

18 ( )

14

4

가

( "

" )

7

( "

" )

)

(

.

)

.< 2015. 9. 24.>

1.

2.

.

.

가

3.

가

4.

,

가

,

5.

3

6.

가

.

가

7.

가

.

.

,

.

,

.

가

가

8.

1

(

)

가

.

가

14

4

가

---

1.

2. 1 15 , 1 7 ,

3. 1

4. 가 가

14 4

1. " " " "

2. 가 , "

" , " "

3. .

4.

5.

6.

1 , 가

1.

2.

3.

4.

1 .

19 ( ) 16 1 ( )

13 2 ( )

16 4 . )

13 3 .

( . )

1 2 .

가

[ [2014. 6. 5.](#)]

20 ( ) 16 2 1 , , , , ,

1 5 .

[ [2014. 6. 5.](#)]

21 ( ) 16 3 2 ( )  
13 4 ( )  
16 3 4 13 3

1 2

[ 2014. 6. 5.]

22 ( ) 17 2 13 5  
( )  
1

1. 가
2. 13 6

[ 2014. 6. 5.]

23 ( ) 18 1 14 ( )  
2 3 ) . ,

- 1.
2. 5 3
- 3.

[ 2014. 6. 5.]

24 ( ) 18 2 20  
7 15 ,  
18 2 2 3 ( ) ,

. < 2014. 6. 5.>

1 가  
7 15 ( )

. < 2004. 12. 10., 2009. 7. 1.>

12 2 . < 2019. 4. 23.>

24 2( 가 ) 18 2 가  
가 15 2 가  
( , " 가 " )  
( 18 2 ) 1  
1 가 가

2 가 가  
 48 가 가  
 2 가 가  
 48 15 3 ( 가  
 ) 가 가  
 2 가 가

[ 2014. 6. 5.]

24 3( ) 18 5 ,  
 , , ( ,  
 )  
 1 1

[ 2014. 6. 5.]

25 ( 가 ) 가  
 가  
 1 가

26 ( )

- 1.
- 2.
- 3.
- 4.
- 5.
- 6.

가

- 1.
- 2.
- 3.
- 4.
- 5.

1 2

27 <2014. 6. 5.>

27 2( ) 20 2014 6 8  
 3 ( 3 6 8 )

< 2014. 6. 5.>

[ 2014. 1. 8.]

28 ( ) 31 1 2 16  
 . < 2014. 6. 5.>

2014. 6. 5.>

[ 2008. 12. 5.]

< 141 ,2001. 7. 9.>

< 209 ,2003. 11. 17.>

2003 12 19

< 259 ,2004. 12. 10.>( )

< 318 ,2006. 2. 2.>

2006 2 5

< 345 ,2006. 9. 7.>( )

< 4 ,2008. 3. 6.>( )

1 ( )

2

3 ( )

7 , 9 1 , 10 , 13 16 1 " " " "

< 43 ,2008. 12. 5.>( )

< 90 ,2009. 7. 1.>

< 161 ,2010. 9. 10.>( )

---

< 190 ,2011. 1. 26.>

3

< 210 ,2011. 4. 4.>

3

< 297 ,2012. 5. 31.>( )

1 ( )

2 ( )

2012 8 31

< 2 ,2013. 3. 23.>( )

1 ( )

2

3 ( )

7 , 9 1 , 10

, 13 1

16 1

"

"

"

"

< 20 ,2013. 10. 22.>( )

< 50 ,2014. 1. 8.>( )

)

< 72 ,2014. 6. 5.>

1 ( )

2014 6 8

2 ( )

< 2 ,2014. 11. 19.>( )

)

---

1 ( )

2

3 ( )

7 , 9 1 , 10 , 13 1 16 1 " " "

< 7 ,2014. 12. 10.>

1 ( )

2 ( ) 2

< 36 ,2015. 9. 24.>

< 3 ,2017. 7. 26.>( )

1 ( )

2

3 ( )

7 , 9 1 , 10 , 13 1 16 1 " " "

< 112 ,2019. 4. 23.>

경비지도사 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9조제1항관련)

구분 (교육시간)	과 목		시 간
공통교육 (28시간)	「경비업법」		4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3
	테러 대응요령		3
	화재대처법		2
	응급처치법		3
	분사기 사용법		2
	교육기법		2
	예절 및 인권교육		2
	체포·호신술		3
	입교식·평가·수료식		4
자격의 종류별 교육 (16시간)	일반경비 지도사	시설경비	2
		호송경비	2
		신변보호	2
		특수경비	2
		기계경비개론	3
		일반경비현장실습	5
	기계경비 지도사	기계경비운용관리	4
		기계경비기획및설계	4
		인력경비개론	3
		기계경비현장실습	5
계			44

비고: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자격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계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공통교육은 면제한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 (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교육시간)	과 목	시 간
이론교육 (4시간)	「경비업법」	2
	범죄예방론(신고 및 순찰요령을 포함한다)	2
실무교육 (19시간)	시설경비실무(신고 및 순찰요령, 관찰·기록 기법을 포함한다)	2
	호송경비실무	2
	신변보호실무	2
	기계경비실무	2
	사고예방대책(테러 대응요령, 화재대처법 및 응급처치법을 포함한다)	3
	체포·호신술(질문·검색요령을 포함한다)	3
	장비사용법	2
	직업윤리 및 서비스(예절 및 인권교육을 포함한다)	3
기타(1시간)	입교식, 평가 및 수료식	1
계		24

특수경비원 교육기관 시설 및 강사의 기준(제14조제1항관련)

구 분	기 준
1. 시설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165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li> <li>○ 감지장치·수신장치 및 관제시설을 갖춘 132제곱미터 이상의 기계경비실습실</li> <li>○ 100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330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관 또는 운동장</li> <li>○ 소총에 의한 실탄사격이 가능하고 10개 사로 이상을 갖춘 사격장</li> </ul>
2. 강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목 관련학과의 전임강사(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li> <li>○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li> <li>○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실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li> <li>○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li> <li>○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실무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li> <li>○ 체포·호신술 과목의 경우 무도사범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li> <li>○ 폭발물 처리요령 및 예절교육 과목의 경우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li> </ul>

※ 비고 : 교육시설이 교육기관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 등을 통하여 교육기간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06.2.2>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15조제1항관련)

구분 (교육시간)	과 목	시 간
이론교육 (15시간)	「경비업법」·「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8
	「헌법」 및 형사법(인권, 경비관련 범죄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4
	범죄예방론(신고요령을 포함한다)	3
실무교육 (69시간)	정신교육	2
	테러 대응요령	4
	폭발물 처리요령	6
	화재대처법	3
	응급처치법	3
	분사기 사용법	3
	출입통제 요령	3
	예절교육	2
	기계경비 실무	3
	정보보호 및 보안업무	6
	시설경비요령(야간경비요령을 포함한다)	4
	민방공(화생방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	6
	총기조작	3
	총검술	5
	사격	8
	체포·호신술	5
관찰·기록기법	3	
기타(4시간)	입교식·평가·수료식	4
계		88

**경비원 휴대장비의 구체적인 기준**(제20조제2항 관련)

장비	장비기준
1. 경적	금속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호루라기
2. 단봉	금속(합금 포함)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전장 700mm 이하의 호신용 봉
3. 분사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분사기
4. 안전방패	플라스틱 재질의 폭 500mm 이하, 길이 1,000mm이하의 방패로 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안전방패와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5. 무전기	무전기 송신 시 실시간으로 수신 가능한 것
6. 안전모	안면을 가리지 아니하면서,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로 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방석모와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7. 방검복	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방검복과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 호송경비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통지인	법인명칭		허가번호	
	소재지			
통지 내용	출발지			
	종착지			
	중간기착지	도내(지명)	관할경찰서	
		도외(지명)	관할경찰서	
	도급자(회사명)			
	주요호송품명			
	경비업무의 기간	. . . . .부터 . . . . .까지 ( . 일간)		
	호송횟수	월 회		
경비원 명단	성명	직책	성명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결용품)]



제 호

허 가 증

- 1. 법 인 명 칭
-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성 명
- 4. 주 민 등 록 번 호
- 5. 주 소
- 6. 허 가 경 비 업 무

경비업법 제4조제1항·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 지 방 경 찰 청 장

[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m<sup>2</sup>)

---

(뒤 쪽)

연 월 일	변경신교사항	확 인 자



경비업  폐업  휴업  영업재개  휴업기간연장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

신고인	법인 명칭	허가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대표자	생년월일

신고 내용	주소	(전화번호 : )
	폐업 연월일	
	휴업기간 또는 영업재개 연월일	

사유	
----	--

휴·폐업상황

계약 회사명	경비장소	경비원 성명	경비원에 대한 조치

「경비업법」 제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비업의  폐업  휴업  영업재개  휴업기간연장 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허가증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법인명칭	허가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신고 내용	현재		
	변경 후		
	사유		

「경비업법」 제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비업의 허가사항 등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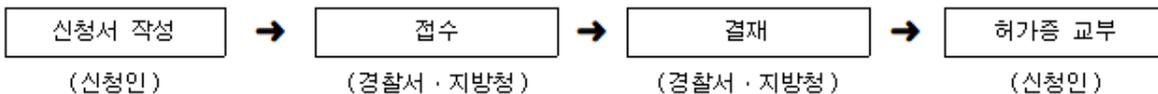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지방경찰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명칭 변경의 경우: 허가증 원본 2. 대표자 변경의 경우: 법인 대표자의 이력서 1부 및 허가증 원본 3. 임원 변경의 경우: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4. 주사무소 또는 출장소 변경의 경우: 허가증 원본 5. 정관의 목적 변경의 경우: 법인의 정관 1부	수수료  2,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 처리절차



210mm×297mm [백상지 80g/㎡(재결용품)]

## 특수경비업무 [ ] 개시 [ ] 종료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지		
경비업무 수행시설	시설명		
	주소지		
도급내역	도급기간	도금액	
	경비원의 수		
경비업무의 기간	개시일	년	월 일
	종료일	년	월 일

「경비업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경비업무의 (개시·종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지방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 경비지도사시험 응시원서

※ 아래 각 항목은 뒤쪽의 응시원서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응시번호		② 응시종목	[ ] 일반경비지도사 [ ] 기계경비지도사	
③ 선택과목	일반경비지도사 [ ] 소방학 [ ] 범죄학 [ ] 경호학			
	기계경비지도사 [ ] 기계경비개론 [ ]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응시자	④ 성명			⑩ 사진 (3.5cm×4.5cm)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소			
	⑦ 연락처	(주택)	(휴대전화번호)	
	⑧ 최종 학력	※ 제1차 시험 면제자 중 학력 증명이 필요한 사람만 기재합니다.		⑨ 직업
		[ ] 대학원 [ ] 대학(교) [ ] 전문대학		
		[ ] 재학 [ ] 휴학 [ ] 졸업 [ ] 수료		
⑩ 제1차 시험 면제 여부 및 사유	[ ] 해당없음 [ ] 전 회 시험의 제1차 시험 합격자 [ ] 경력자 등			
⑫ 「경비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 )년도 제( )회 경비지도사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응시인 <span style="float: right;">(서명 또는 인)</span> </div> (시험관리기관명) 귀하				
담당 직원 확인사항: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제1차 시험 면제자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⑬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 ] 국민연금가입자증명,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본인 <span style="float: right;">(서명 또는 인)</span> </div>				

----- 자 르 는 선 -----

제 회 경비지도사시험 응시표	① 응시번호	⑩ 사진 (3.5cm×4.5cm)
③ 성명	(한자 )	
④ 주민등록번호		
이 사람은      년도 제      회      경비지도사시험 응시자임을 확인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시험관리기관명) <span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2px 10px;">직인</span> </div>		

210mm×297mm(백상지(80g/㎡))

### 응시원서 작성방법

- ① 응시번호: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② 응시종목: 해당하는 종목에 '√' 표시를 합니다.
- ③ 선택과목: 응시종목에 따라 선택과목 1개에 '√' 표시를 합니다.
- ④ 성 명: 한글로 적되, 한자란은 한자를 적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 ⑤ 주민등록번호: 숫자로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⑥ 주 소: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하되, 상세 주소(동·호수)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 ⑦ 연락처: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⑧ 최종학력: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만 작성하며, 같은 조 제4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작성합니다.
- ⑨ 직업: 회사원, 공무원, 학생, 농업, 자영업, 무직, 그 밖의 직업 등을 기재합니다.
- ⑩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여권용 사진(3.5cm×4.5cm)을 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각각 붙여야 합니다.
- ⑪ 제1차 시험 면제 여부 및 사유 :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는 해당되는 사유에 '√' 표시를 합니다.
  - 1) 전 회 시험의 제1차 시험 합격자: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
  - 2) 경력자 등: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⑫ 시험 응시 년도, 회차, 응시원서 제출 날짜, 이름, 서명(또는 날인)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⑬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자 르 는 선

### 응시자 주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2. 수험자는 시험 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습니다), 시험 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야 합니다.
3. 결시 또는 기권하거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에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 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한 경우 해당 시험은 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6.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여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휴대전화 등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 전자기기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7.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학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 SD카드를 제거·삭제해야 하고, 메모리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이 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8.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등 기타 사용 불가 기기는 수험자 유의사항 참조)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9.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0. 그 밖에 시험일정, 운영, 기타 유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 큐넷 홈페이지(www.q-net.or.kr)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 경비지도사 자격증

(앞쪽)

체 호	
<b>경비지도사 자격증</b> (자 격 종 별)	
성 명 :	사진
생 년 월 일 :	
자격 취득 일 :	
위의 사람은 「경비업법」 제11조에 따른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발 급 일)	
경 찰 청 장	직인

54mm×84mm [PVC(비닐)]

(뒤 쪽)

<b>유 의 사 항</b>
1.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목적 외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2. 자격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자격증을 경찰관서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3. 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자격증을 경찰관서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제 호

일반(특수)경비원신임교육이수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의 사람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실시한 일반(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교육원장 [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 70g/m<sup>2</sup>)





## 무기대여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시설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직책			
배치사업장의 명칭	배치사업장의 소재지			
특수경비원 배치 인원				
대여 요청량	총기 종류	수량	탄종	수량
대여신청 사유				
대여기간				
무기관리 방법				
비고				

「경비업법」 제 1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기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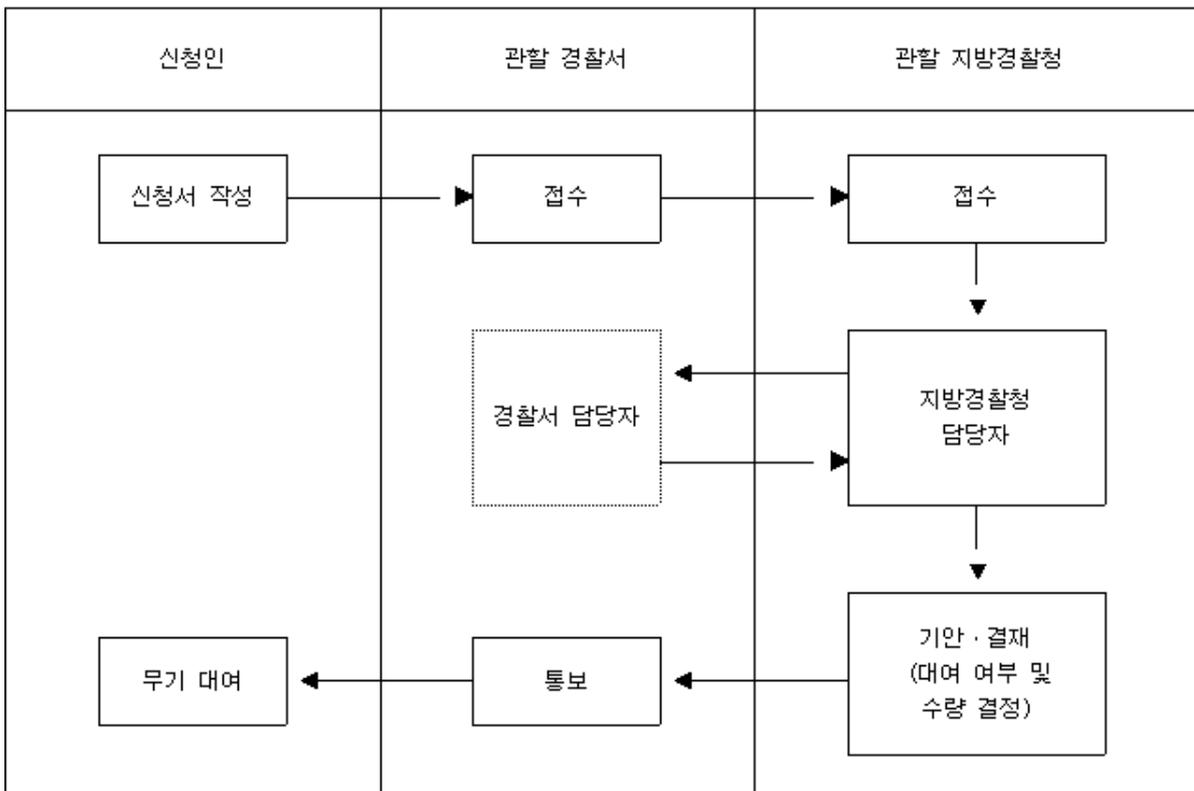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경비원 복장 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법인명칭	허가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복장 사진	상의	하의	
표지장 사진			

「경비업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비원의 복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지방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작성 요령

수 개의 복장을 신고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신설 2014.6.5>

**[ ]경비원 복장 등                    시정명령 이행보고**  
**[ ]출동차량 도색 등**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법인명칭	허가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시정명령 이행보고

시정 지시 사항

시정 결과

「경비업법」 제16조제4항, 제16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복장 등·출동차량 도색 등)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지방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시정사항에 따른 시정결과 사진	수수료 없음
------	------------------	--------

작성요령

수 개의 차량 디자인을 신고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출동차량 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법인명칭	허가번호	
	소재지 (전 화번호 )		

### 차량 사진

전면	후면
좌측면	우측면

「경비업법」 제1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차량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지방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수 개의 차량을 신고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대표자)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지			
대상자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국적*	
	주소			
	취업(예정)직위			

「경비업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우리 업체에 취업(예정)자인 (임원·경비원·경비지도사)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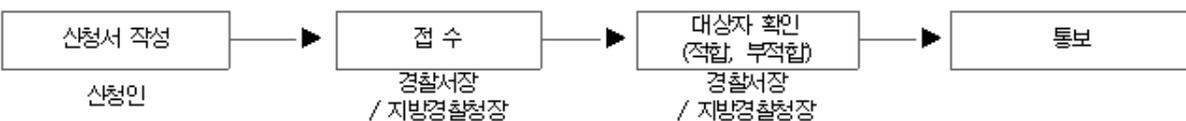
\_\_\_\_\_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경비업 허가증 사본	수수료
	2.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각 1부	없음

### 작성요령

1. 영문 성명 및 국적은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만 적습니다.
2.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결용품)]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국적	
	주소			
	전화번호	주택	휴대전화	

본인은 경비업체 ○○에 (임원·경비지도사·경비원)으로 취업한 사람(취업예정자)로서, 「경비업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_\_\_\_\_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귀하

### 작성요령

1. 영문 성명 및 국적은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만 적습니다.
2.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관리번호		<u>경비원명부</u>										입 퇴	
성명													
주소													
배치지													
병역		군 별			병과	입대 연월일	제대 연월일	군번	계급				
신체상태		신장	체중	시력	혈액형	건강상태	외모특징				취미		
재산		동산	부동산	재산총액	가족						부		
가족관계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직장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2  
(보존용지)

교우 관계	성 명	주 소		직업 및 직책	보증인	성 명	주 소		
상 별					경 력				
연 월 일	종 류		시 행 청		기 간	근무장소			
					~				
					~				
					~				
					~				
					~				
교 육 훈 련					~				
기 간	내 용		기 간	내 용		~			
~			~			~			
~			~			~			
~			~			~			
~			~			~			
~			~			~			
~			~			~			



##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8시간	
경비업체	법인명칭		허가번호	
	소재지 <span style="float: right;">(전화번호 )</span>			
경비지도사	성명	자격번호	연락처	
집단민원현장 관리책임자	성명	직책	연락처	
경비원 배치 내용	배치 예정 일시		배치허가의 요청 기간	
	집단민원현장의 유형 및 배치 예정 경비원 수			
	경비의 목적 또는 내용(구체적으로 기재)			
	배치지 주소 및 경비원의 업무 활동의 범위(구체적으로 기재)			
	사용 예정 장비			
	경비계획			
경비업무 도급인	성명	연락처		
경비원 명단	연번	경비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번호

「경비업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배치될 경비원의 신임교육 이수증 또는 배치될 경비원이 신임교육 면제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	--	--------

### 유의사항

1. 경비계획 기재 또는 배치할 경비원의 명단 작성 시 필요하면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집단민원현장 관리책임자는 선임한 경우만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폐지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경비업체	법인명칭		허가번호	
	소재지 <span style="float: right;">(전화번호 )</span>			
경비지도사	성명	자격번호	연락처	
배치장소	주소			
배치 폐지 경비원 명단	연번	경비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배치 폐지일시

「경비업법」 제 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4조의 2제 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배치폐지 경비원 명단 작성 시 필요하면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 (의견제출 통지)

제 호

귀하

「경비업법」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	성명	( . . . 생)
	주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부과 원인행위	일시	
	장소	
	내용	
적용 법령		
의견제출 기한		

<의견>

년 월 일

OO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인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하여 이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사전납부고지서를 이용하여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100분의 20의 범위 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기관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모사전송	



- 
- [양비업법 시행규칙 \[별도 1\] 삭제 <2014.6.5>](#)
  - [양비업법 시행규칙 \[별도 2\] 삭제 <2014.6.5>](#)
  - [양비업법 시행규칙 \[별도 3\] 삭제 <2014.6.5>](#)
  - [양비업법 시행규칙 \[별도 4\] 삭제 <2014.6.5>](#)
  - [양비업법 시행규칙 \[별도 5\] 삭제 <2014.6.5>](#)